



건설산업기본법 재하도급 관리의무

현장 포켓북

용어의 정리

- ✓ 원수급인(수급인) : SK에코플랜트
- ✓ 하수급인 : Biz.Partner_(BP)
- ✓ 재하수급인 : Biz.Partner와 하도급 계약을 한 협력업체
- ✓ 건설공사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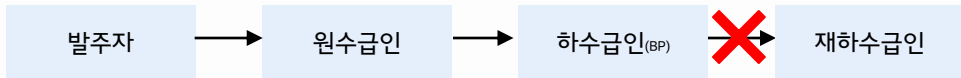
목 차

1.재하도급 금지	4	5.불법 재하도급 발견 시 실무가이드.....	11
2.재하도급 금지 예외.....	5	6.원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	16
3.예외적 허용되는 재하도급 승낙 절차	9	7.재하도급 관리의무 위반 제재	18
4.불법 재하도급 제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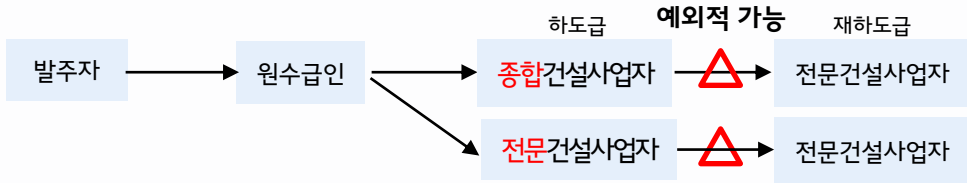
재하도급 금지 (제29조 ③항)

하수급인(Biz.Partner)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원칙 : 금지



하수급인(BP)이 면허(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시킨 때 한하여, 전문건설사업자(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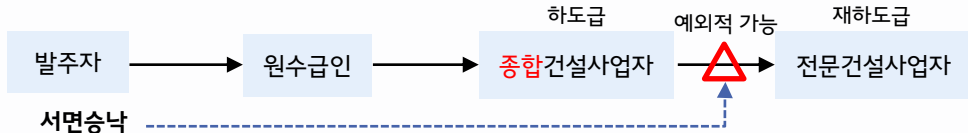
2-2)



재하도급 금지 예외 (제29조 ③항 각호)

재하도급이 가능한 case1 (BP가 종합건설사업자인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_(BP)이 '전문건설사업자'인 재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재하도급에 대한 서면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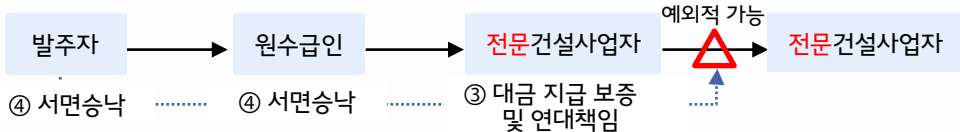




재하도급이 가능한 Case 2 (BP가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_(BP)이 '전문건설사업자'인 재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아래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① 하도급 공사 금액 20% 이내, ② 재하도급 가능한 6가지 공사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시 확인필수 4가지 사항

① 하도급 공사 금액 20% 이내

- ② 재하도급 가능한 6가지 공사
- | | |
|----------------|--------------------------|
| 1. 신기술 적용 공사 | 4. 특허/실용신안권 설정된 자재 설치 공사 |
| 2. 특허 공법 적용 공사 | 5.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 하도급 공사 |
| 3. 건설기계 이용 공사 | 6. 주된 공사에 부수된 공사 |

③ 대금 지급 보증 및 연대책임

-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제3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간 서면 합의
-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건설공사용 부품대금·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대금의 관련자(채권자/근로자)에게 제출

④ 발주자 및 원수급인의 서면 승낙

예외적 허용되는 재하도급 승낙 절차

- ①,②,③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한 후, ④ 발주자 및 원수급인의 서면승낙 절차 진행

① 하도급 공사 금액 20% 이내 → 계약금액 확인

② 재하도급 가능한 6가지 공사 → 공사종류 및 면허확인

③ 대금 지급 보증 및 연대책임 → 2가지 서면 확인

-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 or 공사대금 '직접 지급' 제3자 서면 합의
- '연대책임 합의서'

④ 발주자 &
원수급인의 서면 승낙

불법 재하도급 위반시 제재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_(BP)의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시·공모 시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법인은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음

위반자	위반 행위	처벌 규정
하수급인	불법 재하도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원수급인	1) 불법 재하도급 묵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 불법 재하도급 지시·공모	3년 이하 징역 1년 이내 영업정지

불법 재하도급 발견 시 실무 가이드

- 불법 재하도급 발견 시, 묵인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하수급인(BP)에게 소명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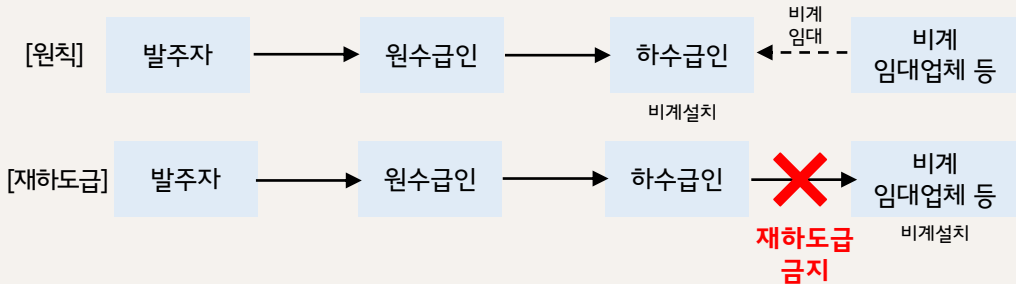
공문작성
필수기재 사항

- ① PJT 정보, ② 법 위반을 발견한 일자 및 사유, ③ 근거자료 첨부,
④ 소명 요구, ⑤ 시정조치* 계획 제출요청

*시정조치 : 하수급인과 제3자(불법 재하도급자) 간의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해지 요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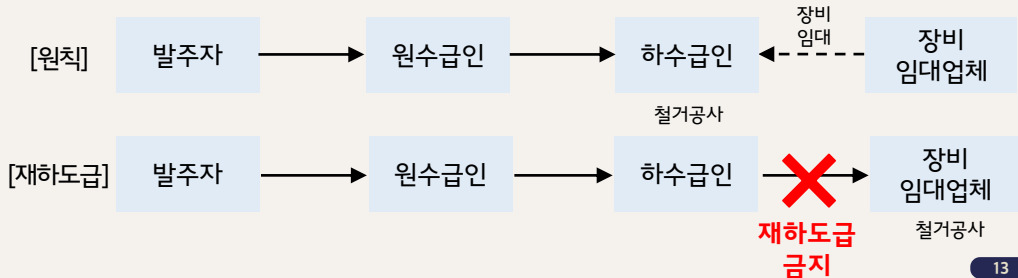
불법 재하도급 사례 : 비계설치 공사

- 하수급인_(BP)이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직접 시공해야 하나, 비계임대업체 등이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직접 시공할 경우 재하도급 해당 가능성 高



불법 재하도급 사례 : 장비 임대

- 장비/장비기사는 건설임대차계약을 통해 하수급인(BP)의 지시/관리 하에 철거공사를 수행
- 장비임대업체가 독자적으로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완료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 가능성 高





Do & Don'ts Guideline

우리는 종합건설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사업자 하수급인_(BP)와 전문건설사업자 하수급인_(BP)를 구분해서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를 영위하는 하수급인_(BP)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다.



전문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_(BP)은 재하도급 요건 4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재하도급 할 수 있다.





Do & Don'ts Guideline

철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종(비계설치/고철매매/장비임대/근로계약 등)의 경우, 전문 면허(구조물 해체 · 비계공사업)를 보유 한 하수급인(BP)이 철거 및 비계설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

→ 하수급인(BP)이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직접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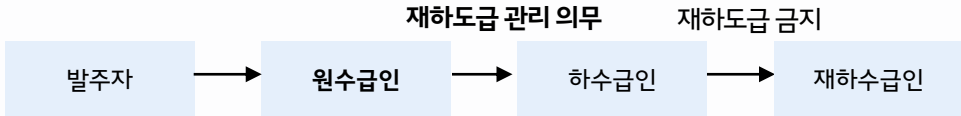


→ 고철매매업체는 철거 된 고철을 수거만 하지 않고, 직접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_(BP)이 제29조 제3항 [재하도급 금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 란

관리의무

우리회사 현재 업무 Process 반영

① 하수급인 대상,

재하도급 금지 **설명**의무

- 계약서 內 재하도급 금지 규정 명시 中

- 불법 재하도급 금지 준법서약서 징구 中

② 하수급인 '현장배치 기술자*'

소속 확인의무

- 계약체결시, 현장배치 기술자 자격 및 소속 확인 中

*현장배치 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규모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의미함

재하도급 관리의무 단순 미이행 위반 제재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BP)의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시·공모 시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법인은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음

위반자	위반 행위	처벌 규정
하수급인	불법 재하도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원수급인	재하도급 관리의무 단순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메모장

발행인 Compliance팀